

대학의 헌법적 가치 실현

김희옥 | 동국대학교 총장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하여 대학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대학의 자유에 관한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 대학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의 내용에 속한다.

오늘날 대학의 학문적 경쟁력은 바로 그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헌법이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명문규정하고 있는 것도 대학의 기본 기능인 국가 인재 교육과 학문의 연구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 연구를 통한 사회기여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유·자치에 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다.

‘...헌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학문의 자유 등의 보호는 개인의 인권으로서 학문의 자유뿐만 아니라 특히 대학에서 학문연구의 자유·연구활동의 자유·교수의 자유 등도 보장하는 취지이다. 이와 같은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 제31조 제4항도교육의 자주성·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이는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라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특히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한다...'(헌법재판소 1992.10.1. 92헌마68, 1998.7.16.96헌바33, 2001.2.22.99헌마613, 2006.4.27.2005헌바1047, 2010.10.28.2009헌마442 등).

대학의 자유는 대학의 인사, 관리, 운영, 재정, 학사에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대학의 자유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학문 일반의 자유제한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되,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필자는 30년이 훨씬 넘도록 법조관련 공직에 있다가 대학으로 온 지 3년 반 정도 되었다. 캠퍼스의 이곳저곳을 걷다보면 많은 학생들이 인사를 하고 웃음을 건넨다. 그럴 때면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새삼 보장된다. 헌법이 정한 헌법적 가치를 대학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총장의 임무라는 생각이 든다. 대학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기관이 우리 국민의 의지와 합의로 제정된 헌법상의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일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보장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닐까.

좀 더 생각을 진전시켜보면, 학교에서 특히 대학에서 그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해서 연구(acquisition of knowledge)와 교육(transition

of knowledge) 그리고 사회기여(application of knowledge)를 제대로 하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역기능적인 문제가 해소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정적인 문제는 바로 광범위한 계층간, 지역간, 단체간, 개인간의 사회갈등 문제이다. 갈등을 넘어서 사회통합으로 나아가는 것도 바로 대학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의 미래는 대학에 달려 있고, 현재 대학의 모습은 미래 우리 사회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유구한 인류역사 속에서 대학은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최고의 창조적 지식개발, 전수를 주도해 왔다. 인도 고대의 날란다(Nalanda), 12세기의 이탈리아의 볼로냐(Bologna), 살레르노(Salerno), 독일의 베를린(Berlin), 영국의 옥스퍼드·케임브리지, 미국의 하버드 등 많은 대학이 이러한 대학의 선구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중국 서주(西周)대의 태학(太學), 한나라의 태학, 수·당대의 국자감, 송대의 국자감과 태학, 명·청대의 국자감이 그러하고, 우리나라 고구려 소수림왕 대의 태학, 신라 신문왕대의 국학(國學), 고려대의 국자감, 조선의 성균관 등도 주요한 '대학'의 역사 선상에 있다.

필자는 오늘 대학에서 일하면서 이러한 대학의 역사성과 우리 국민이 부여한 연구와 교육을 통한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책무를 무겁게 생각해 본다.

동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신문학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6년부터 대검찰청 등 전국 각급 검찰청의 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지청장, 검사장을 역임하고, 2005년부터 법무부 차관, 2006년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일하였으며, 2011년 3월부터 동국대학교 총장으로 일하고 있다. 헌법실무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대교협 대학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도 재임 중이다.